

과태료 자진납부 의사: 있음(), 없음()

과태료부과 의견진술 안내서

업체명(등록번호):

대표자 성명 :

귀하는 「비료관리법」 제30조(과태료) 및 「비료관리법 시행령」 제20조(과태료의 부과기준)에 따라 과태료부과(예정)금액이 원에 해당됩니다.

과태료부과에 따른 의견이 있으시면(년 월 일)부터 (년 월 일)까지 검사원의 소속기관에 우편·전화(각 지원 전화번호) 등으로 의견진술을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.

		년	월	일	
수령인	성명	(인 또는 서명)			
	주소:				전화번호:
검사원	소속	직급			
	성명	(인 또는 서명)			
	주소(각 지원 주소) :				전화번호:

※ 과태료부과 의견진술에 대한 이의신청이 없을 경우 20일 이내에 과태료 처분통지서가 주소지로 발송될 예정입니다.

※ 의견진술 내용을 아래 양식으로 기재하여 상기 검사원의 주소로 우편 또는 전화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- 성 명:
- 전화(휴대폰)번호:
- 의견진술 내용

※ 과태료 감경

- 의견제출기한(20일) 이내에 과태료를 자진납부 하시는 경우에는 「질서위반행위규제법」 시행령 제5조에 따라 부과될 과태료의 100분의 20범위 이내로 감경할 수 있습니다.
- 「비료관리법 시행령」 제20조(과태료의 부과기준) 별표 4의 다항에 해당하는 경우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감경할 수 있습니다.

※ 금품·향응제공, 불편부당한 일처리 및 불친절 사례를 우편·전화·인터넷 등으로 알려주시면 공정하게 처리해 드리겠습니다.

- 기관명 :
- 주소 : (우)
- 전화(FAX)번호: (FAX:)
- 인터넷: www.naqs.go.kr(전자민원 → 부정비리신고)